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23
----------	-------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안상훈 · 안철수 · 임종득
배준영 · 고동진 · 이종배
최은석 · 박덕흠 · 박성훈
정연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 거래자가 고령·중증질환 등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 되어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지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족에게 큰 부담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4월 은행연합회와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던 바, 이를 통해 기존에 제기되어왔던 은행 방문거래 관련 불편사항이 일정 부분 해결되었음.

그러나 환자 의식불명 등으로 명시적인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나 위임장 수여 없이 가족 등이 은행업무를 대리한 경우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다툼을 예방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기타 의식불명자 은행거래

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이에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은행이용자에 대하여 그 가족으로 하여금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추후의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망자 등의 치료비 지급 목적 금융실명거래 대리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이하 “은행이용자”라 한다)가 사망, 의식불명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치료비 지급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의 대리를 허용할 수 있다.

1. 은행이용자의 가족인 자가 의사의 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은행이용자의 가족이 아닌 자가 금융거래에 대한 은행이용자의 위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는 은행이용자 본인의 거래로 본다.
- ③ 은행이용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대리권한은 후견인의 권한에 반하는 범위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대리의 요건 및 범위, 가족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조의2(사망자 등의 치료비 지급 목적 금융실명거래 대리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이하 “은행이용자”라 한다)가 사망, 의식불명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치료비 지급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의 대리를 허용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은행이용자의 가족인 자가 의사의 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u> <u>2. 은행이용자의 가족이 아닌 자가 금융거래에 대한 은행이용자의 위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u> <p><u>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는</u></p>

은행이용자 본인의 거래로 본
다.

③ 은행이용자에 대하여 「민
법」에 따른 성년후견인·한정
후견인·특정후견인 또는 임의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대리권한은
후견인의 권한에 반하는 범위
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대
리의 요건 및 범위, 가족의 범
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